

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98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0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,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재활용품의 자원화율 제고에 기여하고자,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

나. 위탁근거

- 폐기물관리법 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
-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(위탁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(대상사무)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재활용 선별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, 유지보수
- 재활용품 반입 및 선별, 선별 잔재물의 운반 및 처리
-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치: 미탄면 서동로 3391-27
- 대지면적: 4,990m², 건축면적: 1,159.01m²
- 세부 위탁시설

기계분야	건축분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활용품 선별시설: 10톤/일 • 컨베이어: 16개소 • 스티로폼 감용시설(파쇄포함): 1식 • 발리스틱선별기: 1대 • 자력선별기: 1대 • 철캔/알캔 압축기: 1대 • 가스캔절단기: 1대 • PET타공기: 1대 • 진동스크린: 1대 • 광학선별기: 1대 • 플라스틱압축기: 1대 • 플라스틱저장호퍼: 4개소 • 지게차: 1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지면적: 4,990m² • 재활용품 선별동: 1,159.01m² • 스티로폼 처리동: 699.47m² • 비가림시설: 340.6m²

- 운영인력(증 7명)¹⁾

구 분	합계	선별	압축기 감용기	이송	관리직	기술직
인원	26	17	4	3	1	1

마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기간: 2026. 1. 1. ~ 2028. 12. 31. / 3년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1) 2024년 평창군 재활용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강원 전체 1일 처리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적정 운영인력은 26명으로 산정

* 24년 반입량(3,531.6톤) ÷ 1인 평균 선별량(136.98톤) = 25.78

○ 수탁자격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평창군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(법인, 사업자)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않으며,
-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(지정폐기물 외 폐기물)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(지정폐기물 외 폐기물)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(지정폐기물외 폐기물) 허가를 득한 사업자 또는 서비스업 재활용처리시설 위탁관리업으로 하는 사업자
-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인정

○ 선정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

- 입찰방식: 공개경쟁(협상에 의한 계약)
- 평가기준: 기술능력평가 80점, 가격평가 20점
- 관련근거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위탁대가: 연 1,677,920천원 / 3년간 5,033,760천원

* 불임 민간위탁 원가산정 내역 참조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(제4조의2)

-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는 행정적 업무 실행이 필요치 아니한 반복적 피동적 단순노무업무(병, 캔, 플라스틱류, 고철류 등 수동선별)로 공공기관 직영보다 민간위탁 운영방안이 효율적
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,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·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

자. 추진경위 및 운영현황

- 민간위탁 추진 경위(연혁 등)
 - 자원회수센터 운영(직영): 2018. 3. 1. ~ 2020. 3. 30.
 -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(최초): 2020. 4. 1. ~ 2022. 12. 31.
 - * 수탁자 (유)주민지원협의회 정근영
- 운영현황
 - 위탁운영사: 유한회사 평창재활용선별장 대표 정근영
 - 위탁기간: 2023. 1. 1. ~ 2025. 12. 31.
 - 위탁대가: 연 1,160백만원
 - 근로자 현황

구 분	합계	선별	압축기·감용기	이송	관리직	기술직
인원수(명)	19	14	1	1	2	1

- 운영실적

(단위: 톤, 천원)

연도별	반입량	일 처리량	판매량	판매실적	비 고
2022	2,943	8.17	2,108	244,395	
2023	3,405	9.46	2,637	386,244	
2024	3,531	9.81	2,763	353,588	
2025	2,783	10.3	2,063	239,366	9월까지

관계법령 발취

□ 폐기물관리법

제62조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·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5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
□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2조(위탁)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평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가 직접 관리·운영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 및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4.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평창군 관내에 설립된 법인체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
8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

민간위탁 원가산정 내역

구분			26명, 상여금 100% 기준	
			월간 금액	년간 금액
고정비	노무비	노무비	86,118,000	1,033,416,000
		소계	86,118,000	1,033,416,000
	경비	보험료	8,405,000	100,860,000
		복리후생비	7,798,000	93,576,000
		기타경비	3,078,000	36,936,000
		소계	19,281,000	231,372,000
	순원가		105,399,000	1,264,788,000
	일반관리비 (6 %)		6,323,000	75,887,000
	이윤 (1 0 %)		11,172,000	134,067,000
	총원가		122,894,000	1,474,742,000
	부가가치세 (1 0 %)		12,289,000	147,474,000
	고정비 합계		135,183,000	1,622,216,000
변동비	경비	지게차손료	230,000	2,760,000
		지게차경비	3,990,000	47,880,000
		소계	4,220,000	50,640,000
		부가가치세(10%)	422,000	5,064,000
	변동비 합계		4,642,000	55,704,000
총계		139,825,000	1,677,920,000	